

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

교시	시험과목	시험시간	수험번호	성명	향후일정 안내
2교시	상표법	120분			

【 문제-1 】 (30점)

A 회사는 1974년 10월경 호랑이 얼굴을 의인화하여 ‘HALLO KITTY’라는 캐릭터를 창작하였다. 이 캐릭터는 국내에서 1979년 2월경부터 그에 관한 상표 등록 및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2000년경 이미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상표표지가 되었다. A 회사는 ‘HALLO KITTY’ 캐릭터에 다양한 의상을 입히거나 소품을 이용해 변형을 가하여 인형, 손수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- (1) 상표 사용의 개념 및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각각 설명하시오. (8점)
- (2) B 회사는 인형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호랑이 디자인 모양의 인형을 판매하고 있다. B 회사의 인형과 A 회사의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에 차이가 있으나, B 회사의 인형에는 ‘KITTY’라는 문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. 이 경우 B 회사의 제품이 A 회사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, 출처표시와 디자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. (10점)
- (3) C 회사는 조선시대의 여자 의원인 ‘女長今’(여장금)을 주인공으로 하는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, ‘女長今’을 2006년경에 상표 등록하였다. A 회사는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A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조선시대 의원의 복장을 하고 신선로를 들고 있는 ‘HALLO KITTY’ 캐릭터가 부착된 휴대전화기 줄, 손수건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. A 회사의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 아래에는 C 회사가 상표 등록한 ‘女長今’을 표시·광고하였다. C 회사의 ‘女長今’ 상표는 2008년경까지 주지의 상표는 아니었다. 이 경우 A 회사가 C 회사의 ‘女長今’을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, A 회사는 C 회사에 대하여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12점)

상표법 4-1 [2교시]

【 문제-2 】 (20점)

A 회사의 등록상표 X는 잎맥이 드러나는 세 갈래 잎 형상의 단위 구성요소를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세 갈래 잎이 일렬로 연결되어 원형을 이루는 도형상표로서 이전의 도자기 그릇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문양의 상표이다. A 회사는 그릇 가운데의 문양을 A 회사의 꽃나무 문양이나 풀꽃 문양 등 여러 가지의 꽃문양으로 다양하게 교체하고 테두리에는 등록상표 X와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하여 2개 이상의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사용한 도자기 그릇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다.

B 회사는 B 회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꽃문양을 그 형태대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접시일 경우에는 B 회사 자체의 꽃문양을 사용하고, 제품이 대접이나 머그잔일 경우에는 상단 테두리에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하고, 그릇의 옆면에 꽃문양을 사용하는 등 그릇의 모양에 따라 A 회사의 등록상표 X와 같은 나뭇잎 띠 문양과 꽃문양을 함께 또는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.

B 회사는 나뭇잎 띠 문양을 A 회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위치로 제품에 표현하여 판매하고 있다. 이 경우 B 회사의 제품에 표현된 문양은 단순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. 이 때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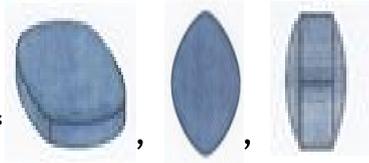
구분	A 회사의 등록상표 X	B 회사의 나뭇잎 띠 문양 사용 제품
표시		

- (1) 결합상표의 개념 및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. (8점)
- (2)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구성 부분 중 하나의 도형이 가지는 외관, 호칭 및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, A 회사의 등록상표 X와 B 회사의 나뭇잎 띠 문양에 대한 유사 판단에 대하여 논하시오. (12점)

상표법 4-2 [2교시]

【 문제-3 】 (30점)

A 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 내의 법인으로서 심장혈관 치료제인 ‘바이어그렘(Viagram, 이하 ‘바이어그렘’이라 한다)’을 비롯한 다수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. A 회사는 심장혈관용 약제,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,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



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한 “  ,  ,  ” 표장을 ‘바이어그렘’이라는 상표로 우리나라에 2003. 11. 6. 상표등록출원하여 2005. 2. 17. 상표등록을 받았고,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았다. 한편 B 회사는 ‘백세정 50밀리그렘’ 및 ‘백세정 100밀리그렘’에 대하여 2012. 5. 18.



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하여 “  ”, “  ”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를 생산·판매·광고하고 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- (1) A 회사는 B 회사의 제품 형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. A 회사 주장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. (8점)
- (2) A 회사는 ‘Viagram’ 및 ‘바이어그렘’ 문자 상품 표지와 별도로 ‘Blue diamond is forever’ 문구, 푸른색 다이아몬드 사진, 손바닥 위의 푸른색 마름모 도형 그림 등을 활용하여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 활동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·저명성을 획득하였다. 그 후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. 이에 대한 B 회사의 법적 대응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10점)
- (3) [위 (1)문 및 (2)문과 별도] A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후 국내에서 직접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, 2005. 4. 20. 甲과 5년간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 甲은 A 회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·판매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, 甲의 지속적인 광고로 인하여 A 회사의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하여 주지·저명성을 획득하였다. 한편 甲은 2010. 5. 20. 부터 A 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사용하다가 2010. 7. 20. 이를 상표등록출원하였다.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설명하고, 만일 상표 등록되었다면 A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12점)

상표법 4-3 [2교시]

【 문제-4 】 (20점)

A와 B는 2014. 3. 20. ‘스포츠 의류’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X를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한 후 2015. 8. 20. 상표등록을 받았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- (1) A는 2015. 10. 20. 등록상표 X에 대하여 B의 동의 없이 C와 1년의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반대급부로서 로열티를 받았다. C는 이 계약에 의해 2015. 10. 21. 특허청에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였고, 그 후 등록상표 X를 ‘스포츠 의류’에 사용한 제품을 생산·판매하고 있다. A, B 및 C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6점)
- (2) [위 (1)문과 별도] 공유 상표권자 A와 B는 2016. 1. 20. 등록상표 X에 대하여 D와 2년의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만 이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지는 않았다. 전용사용권자 D는 2016. 2. 11. 등록상표 X에 대하여 E와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1년의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E는 2016. 4. 20. F와 통상사용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(이 때 E와 F는 선의임). D, E 및 F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14점)

상표법 4-4 [2교시]